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염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건강 보호와 공중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3. “감염취약계층”이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을 말한다.
4. “감염취약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아. 그 밖에 감염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 “감염병 예방활동”이란 방역소독, 의료·방역물품 지원, 위생·환기 관리, 감염병 예방 교육 등 감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감염병관리기관”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의 수립·시행

2.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등 감염병 예방활동

3.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 위기 시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그 가족 등이 감염병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진단·관리·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감염병의 발생 신고, 역학조사 및 구청장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등은 구청장에게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협조)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구청장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감염취약시설의 유형별 현황
3.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소독의 대상 시설, 실시 주기 및 방법
4.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대책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
6.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감염취약시설 실태조사 및 지도)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취약시설의 장의 동의하에 감염관리 실태를 현장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의 장에게 방역물품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지도하거나, 시설장 및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감염병의 신고 및 독려) ①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물 및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의료인등 관계인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진료와 격리를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한시적 지정을 포함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에 의료·방역물품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취약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독제, 개인보호구, 진단키트 등 방역·위생물품
2.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 방역·소독에 필요한 물품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취약시설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자체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및 양성) ① 구청장은 감염취약시설의 장에게 종사자 중 1명 이상을 자체 감염관리 담당자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담당자가 소속된 시설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역물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감염취약시설 방역) ① 구청장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소독 등 감염병 예방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방역소독 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방역소독의 권고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 방역소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 의무 대상과 그 외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방역소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하여 감염병 발생 정보의 공유, 감염취약시설의 방역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제2호부터 제12호까지 생략>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제6호 이하 생략>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항 생략>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 생략>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생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 호 및 제 2항 이하 생략>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 호 및 제 2항 이하 생략>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2항 이하 생략>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3항 이하 생략>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제 2항 이하 생략>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항 이하 생략>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 2항 생략>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 4항 생략>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제9호・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